

## 제36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

1. 회의일시 : 2009. 8. 19.(수) 10:00
2. 장 소 : 방송통신위원회 14층 회의실
3. 참석위원 : 최시중 위 원 장  
송도균 부위원장  
이경자 위 원  
이병기 위 원  
형태근 위 원 (5인)
4. 불참위원 : 없 음
5. 회의내용
  - 가. 성원보고
  - 나. 국민의례
  - 다. 개회선언
  - 라. 회의공개여부 결정
  - 마. 전차회의록 확인

**바. 의결사항**

**1) 2009년 상반기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에 관한 건\_(주)설성방송 등 5개 법인 (2009-36-164)**

○ 신용협 통신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, 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5조와 제10조에 따라 전송역무(인터넷접속)와 주파수할당역무(위성휴대통신) 기간통신사업자가 신청한 허가 여부를 심의하여 원안대로 의결함.

○ 대상 사업자

역 무	법인명	지역	허가여부	비고
전송역무 (인터넷접속)	(주)설성방송	충북 음성군	허가(신규)	심사결과 적격
	보성케이블 네트워크(주)	전남 보성군	허가(신규)	“
	(주)청리케이블 네트워크	경북 상주시	-	심사결과 부적격
	(주)영남중앙케이블 네트워크	경북 예천군, 의성군	-	“
주파수할당역무 (위성휴대통신)	(주)KT	전국	허 가	심사결과 적격

○ (허가조건) ①공정경쟁을 위한 법령준수 의무, ②품질·장애 발생에 대한 실시간 관리의무, ③제3자에 대한 가입자 정보제공 금지 등

**2) 설비제공 절차개선 관련 KT합병인가조건 이행계획 승인에 관한 건 (2009-36-165)**

○ 신용협 통신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, KT-KTF 합병 인가조건에 따라 KT가 제출한 ‘설비제공 합병인가조건 이행계획’을 심의하여 원안대로 의결함.

○ 인가조건 이행계획 주요 내용

- (인입관로) ‘10년 5%~’14년 23%까지 제공하고, 제도 시행 2년 후인 ‘11년 통신시장 경쟁상황평가 결과에 따라 제공범위 재검토
- (전주 인입선) 설치 후 익일까지 신고
- (정보 제공) 설비현황 및 설비 여유율 제공 시스템을 구축·운영
- (절차간소화) 전산시스템을 통한 신청절차 간소화 및 처리기간 단축
  - ※ 전주·관로 처리기간 : 2~4주 → 1~2주로 단축
- (불만처리) KT에 설비제공 전담부서 설치·운영

**3) 150kHz이하 RFID 기술기준 등 무선설비규칙(고시) 일부개정에 관한 건 (2009-36-166)**

- 박윤현 전파기획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, 도난방지 태그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150 kHz이하 RFID의 인식거리 확장 및 기술기준 미비점 보완하기 위한 '무선설비규칙'과 '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했을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' 일부 개정안을 심의하여 원안대로 의결함.

※ 국내 출력 기준값은 102.7dB $\mu$ V/m@3m으로 미국(152dB $\mu$ V/m@3m), 유럽(151.6dB $\mu$ V/m@3m) 기준값 보다 낮아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어려움.

※ 150kHz이하 RFID는 허가·신고 없이 사용 가능한 미약전파기기로 마트 도난방지 시스템, 마라톤 선수 추적, 동물관리 등의 분야에서 이용

○ 주요내용

- 미국, 유럽 수준으로 출력기준을 상향 조정
- 불요발사 측정방법 보완 및 일부 누락된 전파형식 추가 등 오류사항 수정

**4) 70/80GHz대역 고정 점대점 통신용 주파수 용도지정 등에 관한 건 (2009-36-167)**

- 박윤현 전파기획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, 70/80GHz대역 고정 점대점 통신용 '주파수 분배표'와 '무선설비규칙' 일부개정안을 심의하였으나,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차기 회의에 재상정하기로 함.

**5) (주)강원민방의 재허가 조건 변경에 관한 건 (2009-36-168)**

- 황부군 방송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,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의 (주)강원민방 이사진입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재허가 조건(이행각서) 변경 요청 건을 심의하였으나,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차기 회의에 재상정하기로 함.

**6) 방송광고 편성법규 위반 사업자 과태료 부과에 관한 건\_(주)브이씨엠미디어 등 6개사 (2009-36-169~174)**

- 김준상 방송진흥기획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, 「방송법」 제73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59조제2항제2호에 의한 방송광고편성 허용범위를 위반한 6개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해 「방송법」 제108조제1항제10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심의하여 원안대로 의결함.

o 위반내용 및 과태료

위반내용	법 인 명 (채널명)	과태료
시간당 광고 시간 초과	(주)브이씨엠미디어(시네마TV)	3,000만원
	(주)엔씨에스미디어(리얼TV)	1,000만원
	(주)씨유미디어(YTN star)	500만원
	(주)지텔레비전(GTV)	500만원
	(주)엠지엠태원(MGM)	500만원
중간광고 시간 초과	(주)씨엔엔터테인먼트(CNTV)	500만원

사. 보고사항

아. 기 타

1) 차기 회의 일정에 관한 사항

- o 차기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는 2009. 8. 21.(금) 09:00에 개최하기로 함.

6. 폐 회 (11:40)

- ※ 최시중 위원장은 의결안건 「마」 ‘강원민방의 재허가 조건 변경에 관한 건’ 이후 국무위원의 고 김대중 전 대통령 빈소 합동 조문 차 이석하여 송도균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함.